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65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안영호, 박경흠, 이명녀,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1. 개정이유

의원 등록 시점, 의장·부의장 선거 및 임기 산정에 관한 규정을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투표 절차를 신설하여 표결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및 표결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규칙 전반의 용어 및 문언을 정비하여 통일성과 가독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원 등록 시점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 시기, 당선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다. 의장·부의장 임기 및 임기 기산점 명확화(안 제12조)
- 라. 표결 참가 기준 정비 및 표결 결과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방식 보완에 관한 사항(안 제48조의2, 제49조)
- 마. 전자투표 절차 신설 등 투·개표 절차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안 제50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 병기 삭제, 띄어쓰기 등 문언 정리에 관한 사항

3.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74조, 제83조
- 나. 「국회법」 제2조 및 제9조, 제15조

4 (제281회-본회의 제2차부록)

5. 참고사항

가. 규칙안 예고: 2026. 3. 16. ~ 3. 23.(7일간) /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그 임기 초”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의원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구두(口頭)”를 “구두”로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당선자결정”을 “당선자 결정”으로,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3일전”을 “3일전 18시”로, “등록신청을 해야”를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3일 전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의원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횃수(回數)”를 “횃수”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치유(治癒)”를 “치유”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의(動議)”를 “동의”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성명(聲明)”을 “성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의사(意思)”를 각각 “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案)을”을 “안을”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대안(代案)”을 “대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번안(飜案)동의”를 “번안동의”로 한다.

제40조 단서 중 “의사(議事)”를 “의사”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사인(私人)적”을 “사인적”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본회의장에 출석한”을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으로, “있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결은 투표종료 선포가 있을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을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로,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을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로, “표결할”을 “표결에 참가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사(意思)”를 “의사”로 한다.

제49조제3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시작은 의장의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2.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며,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마지막으로 누른 것을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한다. 그러나,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되,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2.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수로 한다.
3. 개표결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확인된 명패수와 본회의에 출석하고도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해당 출석의원의 수에서 투표수를 공제한 수와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투표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5.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서로 교대하여 투표한다.
6.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신한다.

제53조제1항제6호 중 “이동(異動)”을 “이동”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3호다목 중 “기초(起草)”를 “기초”로 한다.

제71조제5항제2호 전단 중 “처음”을 “처음”으로, “때에는 ”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시효(時效)”를 “시효”로 한다.

8 (제281회-본회의제2차부록)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신청인 서명란 중 “제11조제6항에”를 “제11조제7항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등록) ①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u></p> <p>② <u>사무국장은 제1항의 의원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u></p> <p>③ <u>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u></p>	<p>제3조(등록) ① ----- ----- <u>당선인으로 결정된 후</u>----- ----- -----.</p> <p><삭 제></p> <p>③ ----- <u>제1항</u>----- ----- <u>지방</u> <u>의회의원 총선거</u>----- ----- -----.</p>
<p>제10조(청가 및 결석) ① ~ ⑤ (생략)</p> <p>⑥ <u>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u></p>	<p>제10조(청가 및 결석)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구두</u> -----.</p>
<p>제11조(선거)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그 결과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u></p>	<p>제11조(선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u></p>

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결선투표 없이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제6항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고 의장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단서신설 2018.10.1.>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해당 다음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전부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 득표자 전부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동점득표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최다선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최다선 의원 중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

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3일 전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생략)

제12조(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
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이 되
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
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
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
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6조(회기) ① ~ ③ (생략)

④ 의회의 회기별 횡수(回數)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
번으로 부여하되, 해당 회기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 구분한다.

제18조(개의 등 선포) ① (생
략)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후
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
만, 그 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2조(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
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
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6조(회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횡수-----

-----.

제18조(개의 등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治癒)하고 속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1조(변경) ① (생략)

②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23조(발의·제출) ① (생략)

②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제출은 법령에 따른 의안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안건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구민에 대해서는 성명(聲明) 등 직접 그 의사(意思)를 표명하는 안건은 제외한다.

1. (생략)

2. 결의안: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意思)를 표명하는 안건

---- 치유-----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동의-----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발의·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성명 -----
----- 의사-----
-----.

1. (현행과 같음)

2. -----
----- 의사-----

③ 의안은 그 안(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발의·제출해야 한다.

제30조(수정동의) ① ~ ③ (생략)

④ 의안에 대한 의원의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5조(번안) ① (생략)

② 본회의에서의 번안(翻案)동 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2. (생략)

③ ~ ⑤ (생략)

제40조(계속발언)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의원에게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제45조(5분 자유발언) ①·② (생략)

③ ----- 안을 -----

-----.

제30조(수정동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안-----

-----.

제35조(번안) ① (현행과 같음)

② ----- 번안동의-----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계속발언) -----

-----.
----- 의사-----
-----.

제45조(5분 자유발언) ①·② (현행과 같음)

략)

③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범위 외에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발언을 할 수 없다.

- 1. (생략)
- 2. 정치적·종교적 또는 단순한 사인(私人)적 발언

3. ~ 5. (생략)

④·⑤ (생략)

제48조의2(참가 등) ①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도 투표함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③ 의원은 표결에 참가하여 이미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방법) ①·② (생략)

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 2. -----
사인적 -----

3.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참가 등)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
-- 없다.

② 표결은 투표종료 선포가 있을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

-----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 재석버튼
----- 을 눌러서 재석이 -----
-- 표결에 참가할 -----
-----.

③ -----
----- 의사-----
-----.

제49조(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서로 교대하여 투표한다.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2.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 수로 한다.

3. 개표결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확인된 명패수와 본회의에 출석하고도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해당 출석의원의 수에서 투표수를 공제한 수와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투표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5.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서로 교대하여 투표한다.

6.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

③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신한다.

신한다.

<삭 제>

④ 개표결과 명패합과 투표함에 서 확인한 명패 및 투표용지의 수(이 조에서 각각 “명패수” 및 “투표수”라 한다) 중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라 확인된 명패수와 본회의에 출석하고도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해당 출석의원의 수에서 투표수를 공제한 수와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투표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삭 제>

제53조(작성)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1. ~ 5. (생략)
6.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변동

제53조(작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이동-----

7. ~ 14. (생략)

② (생략)

제60조(심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심사에서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의안에 대한 검
토보고

가. 나. (생략)

다. 위원장의 명에 따라 전문
위원이 기초(起草)에 참여
한 의안

라. (생략)

③ · ④ (생략)

제71조(제안설명과 회부·부의)

① ~ ④ (생략)

⑤ 의장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수정예산
안의 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
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실수 등
의 사유로 편성·제출할 경우에
는 해당 수정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

1. (생략)

2.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7.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 기초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제안설명과 회부·부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처음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
난 후 제출된 때에는 바로 예
결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3. 4. (생략)

제95조(대상과 시효중단 등) ①
(생략)

② 의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제1항제2호의 의무위반과 관련
하여 수사가 착수된 때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제96조에
따른 징계의 요구·보고 및 회
부의 시효(時效)를 중단해야 한
다. 다만, 해당 종국판결 결과
징계대상 여부에 따라 그날부터
다시 시효는 계속된다.

----- 때에는 -

-----.

3. 4. (현행과 같음)

제95조(대상과 시효중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효-----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국회법」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 | |
|---|
| <p>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미첨부 사유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소 속: 의회사무국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권기연
- 연락처: (052)290-4241